#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67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정희용·김선교·박덕흠

이종배 • 박상웅 • 송언석

박충권 • 윤재옥 • 배현진

정점식 · 조지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 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 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 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 272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2조의4(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범죄 조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고발 또는 수 사의뢰를 할 경우 언론기관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도자료를 제공한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처리결과(무혐의 처리결과를 포함한다)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도자료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72조의4(선거범죄 관련 보도
	자료 제공 등) ① 각급선거관
	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
	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경우 언론기관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도자료를
	제공한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
	회는 고발 및 수사의뢰에 대한
	처리결과(무혐의 처리결과를
	포함한다)를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도자료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u>칙으로 정한다.</u>